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총지출의 5% 이상 재원배분계획 수립 등〉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7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총지출의<br>5% 이상 재원배분 계획 수립(안 제7조제3항 신설) .....              | 3  |
| 2. 전년도 대비 국가 R&D 재원배분 축소시 국회 동의, 국가 R&D<br>재원배분계획 및 의견 국회 제출 등(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 | 10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2.

다. 회 부 일 : 2024. 7.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4항·제5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총지출의 5% 이상 재원배분계획 수립 (안 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br><u>&lt;신설&gt;</u>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br>-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 |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국가 R&D에 대하여 총지출<sup>1)</sup>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임.

「국가재정법」 제7조<sup>2)</sup>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1)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며,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함(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 등이 포함되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 재정전망 결과 등의 서류가 첨부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 R&D’라 함)을 포함한 12개 주요 분야별 5회계연도 재원배분 계획이 담겨 있음.

---

####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 ⑪ (생략)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조원, %)        |       |       |       |       |       |            |
|----------------|-------|-------|-------|-------|-------|------------|
| 구 분            | '24   | '25   | '26   | '27   | '28   | 연평균<br>증가율 |
| 1. 보건·복지·고용    | 237.6 | 249.0 | 261.0 | 273.5 | 286.3 | 4.8        |
| 2. 교 육         | 95.2  | 98.5  | 102.1 | 105.5 | 108.9 | 3.4        |
| 3. 문화·체육·관광    | 8.7   | 8.8   | 8.9   | 9.0   | 9.1   | 1.0        |
| 4. R&D         | 26.5  | 29.7  | 30.0  | 30.3  | 30.5  | 3.5        |
|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8.0  | 28.3  | 28.6  | 29.0  | 29.3  | 1.1        |
| 6. SOC         | 26.4  | 25.5  | 26.0  | 26.4  | 26.9  | 0.4        |
| 7. 농림·수산·식품    | 25.4  | 25.9  | 26.3  | 26.6  | 26.8  | 1.4        |
| 8. 환 경         | 12.5  | 13.0  | 13.1  | 13.3  | 13.4  | 1.7        |
| 9. 국 방(일반회계)   | 59.4  | 61.6  | 63.4  | 65.4  | 67.1  | 3.1        |
| 10. 외교·통일      | 7.5   | 7.8   | 7.9   | 8.0   | 8.1   | 1.9        |
| 11. 공공질서·안전    | 24.4  | 25.1  | 25.7  | 26.3  | 26.8  | 2.3        |
| 12. 일반·지방행정    | 110.5 | 111.3 | 118.9 | 125.4 | 131.9 | 4.5        |

2024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R&D 분야는 총지출의 4.0%인 26.5조원 규모로서,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및 교육 분야 등에 이어 전체 여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국가 R&D 예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는 코로나 19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및 신성장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0.9%씩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1.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음.

[정부예산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20년~2025년)]

(단위: 조원, %)

| 구 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안)**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연구개발       | 24.2<br>(24.3)   | 4.7  | 27.4<br>(27.5)   | 4.9  | 29.8<br>(29.5)     | 4.9  | 31.1  | 4.9  | 26.5  | 4.0  | 29.7       | 4.3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3.7<br>(35.5)   | 4.6  | 28.6<br>(40.1)   | 5.1  | 31.3<br>(69.4)     | 5.2  | 26    | 4.1  | 28.0  | 4.3  | 28.3       | 4.1  |
| SOC        | 23.2<br>(22.9)   | 4.5  | 26.5<br>(26.6)   | 4.7  | 28<br>(27.6)       | 4.6  | 25    | 3.9  | 26.4  | 4.0  | 25.5       | 3.7  |
| 농림·수산·식품   | 21.5<br>(21.4)   | 4.2  | 22.7<br>(23.0)   | 4.1  | 23.7<br>(23.7)     | 3.9  | 24.4  | 3.8  | 25.4  | 3.9  | 25.9       | 3.8  |
| 보건·복지·고용   | 180.5<br>(197.8) | 35.2 | 199.7<br>(212.1) | 35.8 | (217.7)<br>(229.1) | 35.8 | 226   | 35.4 | 242.9 | 37.0 | 249.0      | 36.4 |
| 교육         | 72.6<br>(71.0)   | 14.2 | 71.2<br>(77.8)   | 12.8 | 84.2<br>(95.0)     | 13.9 | 96.3  | 15.1 | 89.8  | 13.7 | 98.5       | 14.4 |
| 문화·체육·관광   | 8.0<br>(8.1)     | 1.6  | 8.5<br>(8.8)     | 1.5  | 9.1                | 1.5  | 8.6   | 1.3  | 8.7   | 1.3  | 8.8        | 1.3  |
| 환경         | 9.0<br>(9.2)     | 1.8  | 10.6<br>(10.7)   | 1.9  | 11.9<br>(11.5)     | 2.0  | 12.2  | 1.9  | 12.5  | 1.9  | 13.0       | 1.9  |
| 국방         | 50.2<br>(48.4)   | 9.8  | 52.8<br>(52.3)   | 9.5  | 54.6<br>(53.1)     | 9.0  | 57    | 8.9  | 59.4  | 9.0  | 61.6       | 9.0  |
| 외교·통일      | 5.5<br>(5.1)     | 1.1  | 5.7              | 1.0  | 6<br>(5.8)         | 1.0  | 6.4   | 1.0  | 7.5   | 1.1  | 7.8        | 1.1  |
| 공공질서·안전    | 20.8<br>(20.7)   | 4.1  | 22.3<br>(22.3)   | 4.0  | 22.3<br>(22.2)     | 3.7  | 22.9  | 3.6  | 24.4  | 3.7  | 25.1       | 3.7  |
| 일반·지방행정    | 79.0<br>(94.0)   | 15.4 | 84.7<br>(99.7)   | 15.2 | 98.1<br>(110.8)    | 16.1 | 112.2 | 17.6 | 110.5 | 16.8 | 111.3      | 16.3 |
| 총 지출       | 512.3<br>(554.7) | 100  | 558.0<br>(604.9) | 100  | 607.7<br>(679.5)   | 100  | 638.7 | 100  | 656.6 | 100  | 684.4      | 100  |

\* 괄호 안은 추경예산(추경 마지막 회차 기준) 및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기준

\*\* 2025년 예산안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그러나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24년 국가 R&D 예산안을 전년대비 5.2조원(16.6%) 감액한 25.9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정부안 대비 0.6조원 규모를 증액하여 의결하였음<sup>3)</sup>. 그 결과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은 26조 5,369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5,409억원(14.6%) 감소하였음<sup>4)</sup>.

### [2024년 국가 R&D 예산 심의결과]

(단위: 조원, %)

| 구 분        | 2023<br>예산(A) | 2024년 예산 |        |         | 증 감   |         |
|------------|---------------|----------|--------|---------|-------|---------|
|            |               | 정부안      | 본회의 수정 | 확정예산(B) | (B-A) | (B-A)/A |
| 연구개발<br>분야 | 31.1          | 25.9     | 0.6    | 26.5    | △4.6  | △14.6   |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

국가 R&D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미래 핵심기술의 선행적 개발을 지원하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영역인 기초·공공·복지 분야의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재정 측면에서 보면 연구개발예산은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및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됨<sup>5)</sup>.

3)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6.

4) 2025년 예산안의 경우 국가 R&D 예산안은 약 29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조 2천억원(12.1%)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의 4.3% 규모로 편성됨.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2023.6.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 R&D에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보장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를 추진할 수 있고, 기초·공공·복지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미래경쟁력의 근간인 핵심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예산안 편성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정여력이나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야별·부문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을 특정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분야 간 형평성 문제 및 분야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 재량을 무력화하고, 타 분야와의 탄력적 자원배분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 적시 대응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법정 의무지출 신설로 국가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편성토록 제도화하는 경우 투자의 지속성·안정성 면에서 장점

이 있으나, 전체 국가재정 관점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당국 의견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br>· ② (생략)<br><u>&lt;신설&gt;</u><br><br><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br><br>③ ~ ⑪ (생략)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br>· ② (현행과 같음)<br><u>③ 제1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br><u>④ (생략)</u><br><br><u>⑤ (생략)</u><br><br><u>⑥ ~ ⑭ (현행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u> |

2. 전년도 대비 국가 R&D 재원배분 축소시 국회 동의, 국가 R&D 재원배분계획 및 의견 국회 제출 등  
(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br/><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방위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li> <li>- 과기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여야 함</li> </ul>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하 “기재부장관”)이 국가 R&D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은 국가 R&D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과방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가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받아 축소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가 R&D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 및 의견을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춰 제

출받음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과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 축소시 자료 제출 및 상임위 동의를 구하는 의무 주체를 기재부장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 및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는 과기부장관으로 하는 한편, 동의 및 제출 대상 상임위원회는 과방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위원회 동의·자료 제출 내용]

| 구 분                                                          | 의무 주체 또는 대상 위원회 |       |
|--------------------------------------------------------------|-----------------|-------|
|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br>자원배분 규모 축소 시,<br>그 규모 및 이유 제출 및<br>상임위 동의 | 의무 주체           | 기재부장관 |
|                                                              | 대상 위원회          | 과방위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br>자원배분 계획 및 의견<br>상임위 제출                       | 의무 주체           | 과기부장관 |
|                                                              | 대상 위원회          | 과방위   |

현행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을 담당하고 국가 R&D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되<sup>6)</sup>, 국가 R&D 예산에 대해

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부장관과 협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과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기재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sup>7)</sup>.

---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 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③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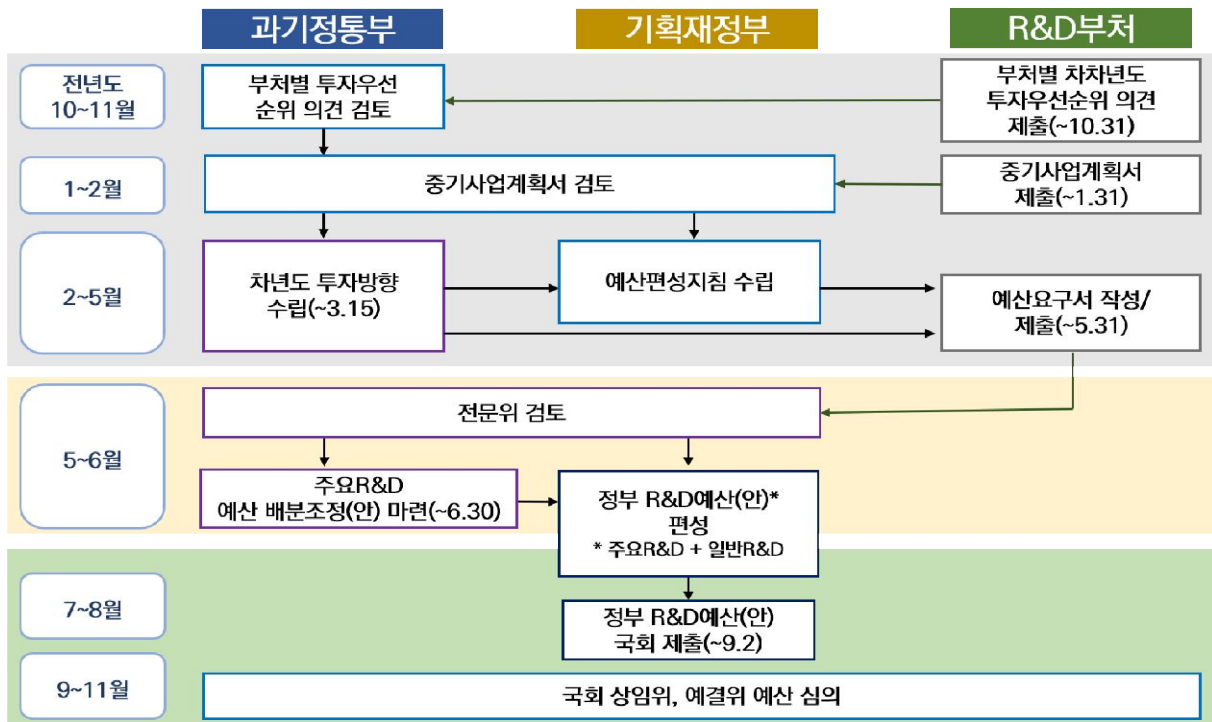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2. (생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 R&D 예산 배분·조정 절차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과기부장관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국가 R&D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8).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8)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계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 ⑦ (생략)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따라서 개정안은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국가 R&D를 포함하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 축소시 자료 제출 및 상임위 동의를 구하는 의무 주체로 하고,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기부장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 및 의견을 제출하는 의무 주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 축소시 자료제출 및 동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 및 의견을 제출’ 받는 소관 상임위를 과방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R&D를 총괄하는 부서는 과기부이고 과기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상임위가 과방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 축소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의 국회 승인 외에는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뿐만 아니라

---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제2호의3·제4호·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예산 편성단계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체 예산규모 대비 국가 R&D 재원배분 비율이나 해당 연도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사업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재원배분 규모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규모 축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연도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예산사업 예산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재정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보고받는 상임위원회 역시 기획재정 위원회로 규정<sup>9)</sup>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대상 상임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국가 R&D 재원배분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및 자료 제출에 대하여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가 R&D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 R&D 재원배분에 대한 국회 논의는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9)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의미함.

### ※ 신·구조문 대비표

문 의 처

– 17 –